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, 구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와 일치하도록 정비(안 제5조)
- 공청회 개최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을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와 일치하도록 정비(안 제10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(안 제2조제1호, 안 제4조, 안 제7조제1항, 안 제11조,
안 제13조제6항, 안 제14조제2항, 안 제1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「행정절차법」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5조에서 입법예고 예외사유를, 행정상 입법예고 인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제1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,

- 안 제10조에서 공청회 개최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을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(공청회 개최의 알림)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,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,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5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, 구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법예고 예외사유의 정비 (안 제5조)

나. 공청회 개최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의 정비 (안 제10조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행정절차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7.13. ~ 8.2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”을 “사항은 다른 법령이 정”으로, “조례로”를 “조례가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”을 “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”를 “공고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”를 “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 각 호의 사항을 구보, 인터넷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제6항 중 “발의당시”를 “발의 당시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호에”를 “제12조제2항 각 호에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자치법규”란 <u>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.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·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<u>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제5조(입법예고 대상)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</u></p> <p>2. <u>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</u></p> <p>4. <u>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<u>사항은 다른 법령이 정</u> ----- ----- <u>조례가</u> ----- <u>따</u> <u>른다.</u></p> <p>제5조(입법예고 대상) ----- ----- ----- <u>「행정</u> <u>절차법」 제41조제1항</u>----- -----.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

제7조(예고방법) ① 입법예고는 입법
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
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공청회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
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
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
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
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. 다만,
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
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
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.

1. 제목

2. 일시 및 장소

3. 주요내용

4.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

5.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
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③ (생략)

제11조(협의 등) 구청장은 자치법규
를 입법함에 있어, 법령 또는 자치
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
른 기관의 협의, 승인 등이 필요한
경우에는 그 협의, 승인 등을 완료
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
여야 한다.

제7조(예고방법) ① -----

-- 공고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공청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「행정절차법」

제38조 각 호의 사항을 구보, 인터

넷 -----.

-----.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협의 등) -----

----- 따라-----

-----.

제13조(비용추계서 작성 방법) ① ~

⑤ (생략)

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,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

제14조(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) ①

(생략)

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시행일)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제13조(비용추계서 작성 방법) ① ~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발의 당시-----.

제14조(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제12조제2항 각 호에-----

-----.

제19조(시행일) ----- 해당-----

-----.